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4

제출년월일 : 1993. 3.

제 출 자 : 속 초 시 장

1. 제안사유

-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거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 공유재산 처분 관리에 있어서 수익매각범위, 디부로 산출기준, 납부기한 등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2. 조문별자

-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마을회'에 무상위탁관리 (안 조례 제5조)
- 건물디부로 산출기준의 조정및 세분화 (안 조례 제25조)
- 디부료의 납부기한을 계약체결일 부터 현 30일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 (안 조례 제26조)
-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의 확대 (안 조례 제39조의 2)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을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으로 한다.

제22조제4호중 "영 제95조제1항"을 "영 제95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제2호 나목 다음에 "다.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중 나목 내지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바목 및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 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사.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제26조제1항 본문 및 제2호의 "30일 이내"를 각각 "60일 이내"로 한다.

제39조의 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이하
로서 1981. 4. 30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등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폐스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 잔여면적도 포함)를 등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스우이의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의 매각별의익에서 매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안)
제5조(마을회관등의 위탁관리) ①시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u>마을회관</u> <u>또는 노인회관의 운영 및 그 관리업무를</u> <u>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게</u>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영 제100 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3 (생략) 4. 영 제9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 호 내지 제8호, 제11호, 제13호, 제 14호, 제16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 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마을회관등의 위탁관리) ①----- ----- -----<u>마을회관,</u> <u>노인회관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u> <u>32조의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으로</u> <u>시행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u> ----- ----- -----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영 제100 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3 (현행과 같음) 4. 영 제95조 제2항 ----- ----- ----- ----- -----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초)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 기준에 의한다.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초)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 기준에 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지하실은 제3호를 전용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u>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u>	<u>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u>
<u>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u>	<u>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u>
<u>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u>	<u>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u>
<u>마. 지하실(2층이하 건물의 지하실 포 함)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u>	<u>마. 지하실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u>
(신 설)	<u>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u>
(신 설)	<u>사. 지하3층이하의 부지평가액의 각 5 분의 1</u>
제26조(대부료의 납기) ①시공유재산의 대 부료는 당해년도분을 다음에 기재한 납 기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 약체결연도의 대부료는 계약체결일로부 터 <u>30일</u> 이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대부료의 납기) ①----- ----- ----- ----- ----- - <u>60일</u> 이내-----

현행	개정 (안)
1. (생략) 2. 경작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하여는 대부계약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u>30일이내</u>,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u>30일이내</u> ② (생략) 제39조의 2(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95조 제2항 제24호에 의한 수익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략) 3. <u>(신설)</u>	1. (현행과 같음) 2. ----- ----- <u>60일이내</u>, - ----- ----- <u>60일이내</u>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의 2(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95조 제2항 제24호에 의한 수익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 (현행과 같음) 3. <u>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이하로서 1981. 4. 30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u>

현행	개정 (안)
	<u>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u> <u>지방자치단체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u> <u>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u> <u>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u> <u>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 또는 2,</u> <u>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u> <u>부근에 한하여 각 매각별외대에서 매</u> <u>각할 수 있다.</u>